

인삼가공제품 일본 수입 통관절차

1. 인삼 가공제품의 일본 수입통관 절차

- 인삼차 등 인삼가공제품의 일본 수입시에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수속이 필요하나 약사법에 저촉되는 건강기능표시 등을 하지 않는 한, 식품으로서 특별한 제약없이 수입이 가능함
- 가공식품을 일본에 수입시에는 반드시 첫회에 한해 식품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후에 통관이 가능하므로, 대량으로 수출하기 전에 사전에 소량의 샘플 통관을 실시해 봄으로써 일본 통관 가능여부를 판정한 후 본 수출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
- 인삼성분 100%의 엑기스, 캡슐제품 등의 경우 통관에 큰 문제없으나, 한방인삼차와 같이 한방약재 등이 사용될 경우 성분에 따라 약사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있을 수 있음. 이 경우 정확한 통관 가능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별도 성분분석표를 제출하여 사전에 추가 확인이 필요함

2. 잔류농약 검사 및 사전검사제도 이용 등

- 인삼성분에 대한 농약기준치가 한·일간에 상이하므로 일본내 잔류농약 기준치에 위반되지 않는지 사전에 한국내 전문검사기관에서 일본 수출용 기준에 맞추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
- 해당 품목의 신속한 검역통관을 위한 방법
 - 일본 후생노동성이 인증하는 한국내 검사기관에서 사전 성분검사 실시하여 동 시험검사증을 일본 도착시 검역소에 제출함으로써 일본내 별도 검사없이 신속히 통관이 가능한 제도가 있음
(수출국 공적검사기관 제도)
 - 일본검역소에서는 제품성분 및 공정표를 보고 검사항목 및 검사여부를 판단하므로 수출이 정해진 시점에서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함
 - 한국내 지정검사기관(예) : 한국식품연구소 담당 신재훈박사

전화 02)3470-8285 이메일 : freeset@kfia.or.kr

3. 기타사항

- 일본의 경우 위생허가 없이 보세구역 등 활용하는 방법은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함
- 인삼가공제품의 일본내 수입된 사례는 엑기스, 타블렛, 드링크, 분말 제품 등 다수 있음(<http://kgcshop.jp/item/88.html>)
- 인삼제품의 주 판매경로는 드럭스토어 또는 통신판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박람회나 상담회 등을 통해 적정한 수입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